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52486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5,605원 및 그 중 17,891,139원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8.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6. 접수 제38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8. 3. 30.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50,991,282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8. 3. 30.부터 2018. 9. 30.까지', 보증내용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 기본계약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었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가 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 3)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4) 소외 회사는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 기본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선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60,792,139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5) 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60,792,139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2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위 60,792,139원을 지급하였다.
- 6)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2018. 11. 29. 5,000,000원, 2018. 12. 31. 18,901,000원, 2019. 4. 12. 19,000,000원 합계 42,901,000원을 회수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보험금 잔액은 17,891,139원(=총 지급 보험금 60,792,139원 - 회수금액 42,901,000원)이고, 위 각 회수금원 합계 42,901,0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위 각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합계 744,466원이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등

-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5. 피고 D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8630호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채권최고액 257,400,000원, 근저당권자 G은행, ② 채권최고액 91,200,000원, 근저당권자 H은행, ③ 채권최고액 60,000,000원 및 75,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C의 재산상황

- 1)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시세 5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감정가 27,720,000원 상당의 전남 함평군 J 소재 토지 합계 552,72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484,200,000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도 K에 대하여 9,025,000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 L은행에 대하여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M은행에 대하여 2,562,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41,923,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N캐피탈에 대하여 39,513,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5,605원(=원고의 지급 보험금 중 미회수 보험금 잔액 17,891,139원 + 기회수 금원 합계 42,901,0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각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744,466원) 및 그 중 미회수 보험금 잔액 17,891,139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가 되는 날인 2018. 12.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20. 10.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의 위 구상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D는, 2019. 2.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어 가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소액인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고, 피고 C의 다른 채권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계좌에서 2019. 3. 6. 3,0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피고 C이 2,500만 원을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 D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실제 피고 C에게 교부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500만 원의 경우 그 사용처 등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 C이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 중 같은 날 다시 송금된 2,300만 원의 수령인인 P, Q이 누구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 D가 피고 C에게 2019. 3. 6.

돈을 빌려주면서 받았다는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은 2019. 6. 4.인데 피고 D는 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가등기 경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525,000,000원 상당이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484,2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에 근접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피고 D가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의문일뿐더러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피고 C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가 되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 D는, 매매예약의 가등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로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매매예약의 가등기로 보더라도 매매예약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라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조).

3) 또한 피고 D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3,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D의 주장은 피고 D에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에 있는 S아파트 T동

[도로영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V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 대 9549.6㎡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9549.60분의 32.16 .끝.

